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제387회 정례회
2020. 12. 9.(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이숙애 의원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0년 11월 20일
○ 회부일자 : 2020년 11월 23일

3. 제안사유

○ 2008년 비준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발효에 따라 「민법」 개정을 통해 성년후견제도가 시행(2013. 7. 1.)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용률은 1%에 불과한 상황임.

○ 이에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충청북도민이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성년후견제도의 홍보 및 이용을 적극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4. 주요내용

가. 성년후견제도 홍보 및 이용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계획 수립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한 구체적 사업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발달장애인, 치매환자,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후견비용 지원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주회)

가. 제출배경

○ 「민법」 개정을 통해 2013.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는 종래의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무능력자 보호제도로서, 장애· 질병·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본인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서 후견개시 심판 절차를 통해 의사결정의 대리인을 선정하고 정신적 제약이 있는 피후견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라, 및 「치매관리법」 개정을 통해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고, 2014년에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8년 9월부터는 「치매관리법」에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공공후견 지원사업이 도입, 시행되고 있지만, 성년후견제도 지원 기능을 총괄하는 시스템의 부재, 공공후견제도의 제한적 이용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 유관기관의 이해 부족 등으로 성년후견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본 조례안은 도 차원의 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총괄체계 구축, 성년후견제 이용 촉진을 위한 홍보 · 교육, 대상 발굴 등 사업 추진 및 후견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3조는 후견이 필요한 충청북도민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의 홍보 및 이용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및 지원 활동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 · 군과 협조하여 충청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을 수립할 것과, 계획의 효율적 수립 · 추진을 위해 성년후견 수요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관련 사항을 규정함.

○ 안 제5조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및 지원과 관련된 사업들을 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안 제6조에 따른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8조는, 발달장애인, 치매환자, 정신질환자 등에게 필요한 후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현재 충북에서는 보건복지부와 매칭으로 발달장애인, 치매환자, 시설입소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공공후견 비용지원 사업(후견심판청구 지원과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사업 시행 근거 마련과 함께 성년후견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성년 후견제도를 도입한 「민법」의 취지에 따라 후견 제도를 활성화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충청북도의 역할을 명확히 한 것으로, 제도의 지속 · 발전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작성되었고, 입법 절차에서도 문제가 없음.